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0 원
- 징 수 결 정 액 : 8 백 만 원
- 실 제 수 납 액 : 8 백 만 원
- 미 수 납 액 : 해당없음
- 결 손 처 분 : 해당없음
- 다 음 연 도 이 월 액 : 해당없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0%(전연도41.9%)

〈201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 위 : 천 원 , %)

예산과목(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	8,116	8,116	0	100.0
세외수입	-	8,116	8,116	0	100.0
임시적세외수입	-	8,116	8,116	0	100.0
과징금및과태료	-	1,074	1,074	0	100.0
과태료	-	1,074	1,074	0	100.0
기타수입	-	7,042	7,042	0	100.0
그외수입	-	7,042	7,042	0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14억 9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4억 9백만원
- 지출액 : 12억 9천 1백만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1억 8천 8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8.3%(전연도 7.9%)가 발생

〈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 세부사업별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산	1,409,341	1,291,092	0	118,249	8.4%
사업예산계	814,225	735,772	0	78,453	9.6%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161,587	157,376	0	4,211	2.6%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161,587	157,376	0	4,211	2.6%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26,000	26,000	0	0	0.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114,474	113,184	0	1,290	1.1%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1,113	18,192	0	2,921	13.8%
시정 청렴도 향상	123,158	110,361	0	12,797	10.4%
시정 청렴도 향상	123,158	110,361	0	12,797	10.4%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65,500	56,356	0	9,144	14.0%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평가시상	45,200	42,005	0	3,195	7.1%
온라인 시민 청원 사이트 서울천만인소유지보수	12,458	12,000	0	458	3.7%

예산과목 (정책/단위/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투자·출연·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현미경 감사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66,382	65,489	0	893	1.3%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출연기관 경영지원	66,382	65,489	0	893	1.3%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13,000	12,949	0	51	0.4%
투자출연기관보조금지원단체등 감사활동강화 및 윤기경영지원	53,382	52,540	0	842	1.6%
부조리 사전 예방 기능 강화	265,533	218,237	0	47,296	17.8%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125,280	105,220	0	20,060	16.0%
부조리신고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23,400	12,693	0	10,707	45.8%
조사(점검)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9,982	68,599	0	1,383	2.0%
공익제보 활성화 미 공익 제보자 지원	31,898	23,928	0	7,970	25.0%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88,230	68,645	0	19,585	22.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8,230	68,645	0	19,585	22.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기강감찰 운영	52,023	44,372	0	7,651	14.7%
기 강 감 찰 운 영	52,023	44,372	0	7,651	14.7%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처리수준 향상	197,565	184,309	0	13,256	6.7%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처리수준 향상	197,565	184,309	0	13,256	6.7%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85,380	80,871	0	4,509	5.3%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	25,700	24,484	0	1,216	4.7%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6,803	6,803	0	0	0.0%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79,682	72,151	0	7,531	9.5%
일반예산계	595,116	555,320	0	39,796	6.7%
기본경비	595,116	555,320	0	39,796	6.7%

나. 예산 전 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 체 : 2천 1백만원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예산이체 현황>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3건					△20,920	20,920
감사관 감사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28,483	△7,560	
감사관 안전감사담당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4,279		7,560
감사관 감사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0	△360	
감사관 안전감사담당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360
감사관 감사담당관	일반행정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3,000	△13,000	
감사관 안전감사담당관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3,000

라. 예산의 변경사용 : 1천만원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변경사용 현황>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4건				209,762	10,482	10,482
감사위원회 안전감사 담당관	일반 행정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 시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842	△1,060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 시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204-03 특정업무경비	29,040		1,060
감사관 조사담당관	일반 행정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9,520	△7,10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00		7,10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일반 행정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420	△522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204-03 특정업무경비	45,360		522
감사위원회 민원해소 담당관	일반 행정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37,620	△1,800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204-03 특정업무경비	30,960		1,800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5년도말 감사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68개, 현재액 1억2천5백25만원임.

〈 2015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금액-백만원)

구분	201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60	0	9	9	0	1	1	68
	금액	104	0	25	25	0	4	4	125
일반회계	수량	60	0	9	9	0	1	1	68
	금액	104	0	25	25	0	4	4	125

Ⅱ. 검토 및 의견

1. 세입결산

가. 세입예산 운용과 다음연도 이월액 관리 미흡

- 감사위원회는 당초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107만원), 및 ‘그외수입’(704만원)으로, 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현황>

(단위:원)

과세내역	항목	수납액
합계		8,116,340
공익제보 보상금 상환	그외수입	341,000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그외수입	6,173,440
2014년 가족수당 반납	그외수입	440,000
2014년 자녀학비 보조수당 환수	그외수입	7,900
가족수당 반납	그외수입	80,000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및과태료	1,074,000

- 감사위원회는 매년 일정수준 이상 세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 각 세입예산과목별 성격에 맞는 추계방법을 적용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당해 연도 세입처리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최근 5년간 감사위원회 세입 결산 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5	0	8,116	8,116	-	-
2014	0	18,632	7,790	-	10,842
2013	0	9,299	4,782	-	4,517
2012	0	6,080	6,080	-	0
2011	0	9,990	5,480	-	4,510

-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보고서에는 2014회계연도에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세입예산(1천1백만원)에 대한 결산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는 징수담당관이 없는 부서의 다음연도 이월세입의 관리는 실국에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산업무는 재무국에서 수행함에 따른 것이라 하고 있음.

※ 2014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중 수납액은 475만원으로 미수납율은 56.1%임.

- 한편, 이월시킨 세입예산의 다음연도 미수납률이 56.1%에 달하는 등 지난 연도 세입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해당 체납세입 예산의 철저한 관리 및 징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해당 소관 실·국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에 대한 결산을 회계보고의 명확화와 정확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당해 실국의 결산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국별 정확한 결산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세입의 다음연도이월 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지난해 수입
2015	8,116	8,116	0	0	4,757
2014	18,632	7,790	0	10,842	4,517
2013	9,299	4,782	0	4,517	0

2. 세출예산

가. 예산의 변경 사용

- 감사위원회는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업(710만원) 및 특정업무경비 부족분(338만원) 확보 등을 위해 총4회에 걸쳐 1천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 하였음.

1) “조사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업

- “조사(점검)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사업의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세부기준 등을 홍보물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고 하겠으나,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산 편성이 가능했음 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에 예산을 변경사용 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 바, 향후 예산 편성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면밀한 소요예산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 2014년 10월2일 공포

※ 2014년 9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각 실·국·본부의 세부 시행지침을 일제 정비추진을 하였음.

< 2015회계연도 변경내역 >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 승인 일자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4건		209,762	10,482	10,482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경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842	△1,060		2015. 11.26	신설부서 정원증가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총당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경영 지원	204-03 특정업무경비	29,040		1,06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9,520	△7,100		2015. 02.25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 상황별 세부기준 등 추가 안내 책자 제작비 증가분으로 인한 변경 요구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00		7,10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420	△522		2015. 12.10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지급을 위한 변경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204-03 특정업무경비	45,360		522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37,620	△1,800		2015. 11.26	'15.1.1.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특정업무경비가 부족함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일부 예산변경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204-03 특정업무경비	30,960		1,800		

2) '특정업무경비' 편성 관련

-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정원이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증원(149명→155명)되어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 사용한 것으로, 감사담당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14~2015년 사이 감사관의 정원변경 내역 >

구분	기관	전체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4.12	감사관	149	150	1	1	1		3	2	25	26	81	75	36	42	2	4
2014.01	감사관	155	155	1	1			4	3	27	27	83	74	38	47	2	3

- 그러나 조직개편은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 및 사전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정업무경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상되는 조직개편과 연계되는 예산의 검토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짐.

- 동 예산이 공무원들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지원하는 경비인 만큼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의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예산을 감액 변경사용한 사업의 경우는 추후 예산 심사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예산 불용율 과다

-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불용률(집행잔액 1억1천8백만원)은 예산현액(14억9백만원)대비 8.3%로 전년(7.9%)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의 불용률(2.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바,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3년간 감사위원회 예산 불용률 >

(단위: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15.3%	7.9%	8.3%

- 특히,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소요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업별 통계목별 30%이상 불용액 발생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지울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3,000	1,612	1,388	46.3%	청백시스템 사용자교육 교재 미제작(한국 지역정보개발원 보급한 교재 사용)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	포상금	15,000	9,601	5,399	36.0%	하정청백리 포상 심사결과 '대상' 적격자 없어 포상금 일부 미집행('본상' 3명 수여함)

<사업별 통계목별 30%이상 불용액 발생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기본경비 (감사담당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500	9,900	6,600	40.0%	2014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반영(4급 부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유보)
기본경비 (안전감사 담 당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20	-	3,220	100%	2014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반영(4급 부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유보)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 린신고 표창	기타보상금	15,000	5,400	9,600	64.0%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나 지급금 액 예측이 어려운 일종의 준비금 성격으로 신고 건수 및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기준 미 적합 등에 따라 집행이 다소 유동적임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기타보상금	10,000	3,574	6,426	64.3%	보상금은 제보자의 신청에 따라 공익제보지 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되는 예산으로 집행이 유동적임. 15년도 총4건 신청되어 3,574천원 집행(36%)되었으나, 이후 제보자 의 보상금 신청 없음에 따른 미집행
기강감찰 운영	공공운영비	14,523	7,472	7,051	48.6%	유가 급락(14년 단가 1,666원/L 대비 203 원/L (12.2%) 하락) 및 감찰환경 변화(원거 라->근거리)에 따른 집행잔액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민간인 국외여비	15,000	-	15,000	100%	공직윤리 비교연수는 민간위원들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 1회 추진해왔으나 금년의 경우 윤리위원간 개인일정 조율이 불가능하여 예 산절감 차원 겸 미추진
기본경비 (조사담당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20	-	3,220	100%	2014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반영(4급 부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유보)
시민감사음 부즈만 운영	국내여비	4,032	2,360	1,672	41.5%	청렴계약 감시활동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로 사업성격상 일괄 감시활동을 하거나, 여비 지급 대상장소가 아닌 본청내에서의 감 시활동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기본경비 (민원해소 담당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20	-	3,220	100%	2014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반영 (4급 부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유보)

1) 부조리신고 및 클린 신고 표창 예산 불용

-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 표창” 사업은 매년 예산을 감액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률이 높게(2013회계연도 불용률 87.8%, 2014회계연도 불용률 100%, 2015회계연도 64.0%) 나타나고 있음.

< 최근3년간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 표창 불용액 발생내역 > (단위:천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3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 표창 (기타보상금)	60,000	7,300	52,700	87.8%
2014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 표창 (기타보상금)	20,000	0	20,000	100%
2015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기타보상금)	15,000	5,400	9,600	64.0%

- 일반시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나 지급액을 예측할 수 없어 준비금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높은 불용률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최근 서울시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렴도 제고와 불용액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신고자보호 등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참여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조리 신고 보상금 :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클린신고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 신고대상 :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 지급기준 : 차등지급(최대 보상금 지급 상한액 20억) - 신고방식 : 서면, 유선, 전자우편, 서울시 홈페이지 - 지급절차 :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 - 지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지급원칙(필요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기를 정할 수 있음)

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예산 불용

-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정책과 윤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민간 위원들의 해외연수를 매년(1회) 추진하고 있으나, 2015회계연도는 해외연수를 미실시하여 민간인 국외여비(1천5백만원)를 전액 불용 처리하였음.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중 민간인 국외여비 >

- 목적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 청렴도 최상위 선진국가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 운영실태 등을 비교 반영하고, 서울시영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개선 및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코자 청렴관련 정책과 윤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음.				
- 2015회계연도 민간인 국외여비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산출내역			
민간인 국외여비	공직자윤리위원 해외연수 및 세미나 15,000천원*1회 = 15,000천원			
- 연간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액				
구분	2013년예산액	2014년예산액	2015년예산액	2016년예산액
민간인국외여비	11,964	15,000	15,000	15,000
- 2015회계연도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명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위원 해외연수	2015.1.~12	15,000	상황에 맞게 추진	

- 2015년에 감사관을 독립제에서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로 변경한 목적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에 신중함을 기하여 청렴시정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으나,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우수사례 수집이나, 부패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운영 실태 조사 및 비교 등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바, 집행부는 다양한 청렴정책의 추진실태 수집을 위한 방안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예산절감은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말하며(2015년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집행부에서 보고한 '예산절감'은 예산이 절약된 '지출절약'(「지방재정법」제48조 제1항, 동법「시행령」제50조)으로, 지출절약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감사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미추진 상황을 자발적 노력에 의한 지출절약 실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바, 정확한 용어사용을 통한 회계보고와 함께 면밀한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결산서상에는 '예산절감'이 아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기하고 있음.

< 민간위원 국외여비의 불용사유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공직자재산 등록 사무처리 (민간인국외여비)	15,000	-	15,000	100%	공직윤리 비교연수는 민간위원들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 1회 추진해왔으나 금년의 경우 윤리위원간 개인 일정 조율이 불가능하여 예산절감 차원 검 미추진

< 특정업무경비 - 「예산편성 운영기준」 >

- 경비의 성격

-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자치단체별 당해 연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월정액규모를 자율 조정하여 결정. 다만, 전 자치단체 공통필수항목(5종)은 유지, 선택항목 변경시 시·군·구는 시도와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

- 지급대상

- 지급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대상	월액(원)
자치경찰 특수활동 경비	200,000
예산담당공무원	150,000
세무담당공무원	100,000
감사담당공무원	80,000(5급이하)~100,000(4급이상)
공무원 단체담당 공무원	60,000(5급이하)~80,000(과장급)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